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

제정 2026. 8. 1. 규칙 제21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통합 이전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(이하 “강릉원주대학교” 라 한다)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

1. 「국립학교 설치령」(대통령령 제36147호) 부칙 제2조(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·폐합에 따른 경과조치, 2026. 2. 27.)
2.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(폐지되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등에 대한 경과조치, 2026. 3. 1.)

제3조(학위수여 요건) ①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」과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」을 적용 받는다. 다만,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2조(석사학위수여 요건) ① 석사학위는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18.5.16.)

1.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 (신설 2018.5.16., 개정 2018.8.17.)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고 총장이 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실적을 인정 받은 자 (신설 2018.5.16., 개정 2021.11.30.)
 - 가. 학술지 게재 논문
 - 나.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연구(창작물)보고서
 - 다. 수료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및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
 - 라. 등록 특허
- ② 통합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1항의 요건 외에 총장이 따로 졸업요건을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3.7.26.)
-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(신설 2018.5.16., 개정 2021.11.30.)

제4조(박사학위수여 요건) ① 박사학위는 이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18.8.17.)

-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1항의 요건 외에 총장이 따로 졸업요건을 정할 수 있다. (신설 2013.7.26.)

1. 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104조에 따른 수료학점 취득

제104조(수료학점) ① 일반대학원의 **석사과정**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**25학점**, **박사과정**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**37학점**으로 한다.

- ② 일반대학원 **석·박사 통합과정**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이수학점은 **61학점**으로 하되, 석·박사 통합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2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 제10조에 따른 논문연구 교과목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윤리와논문작성 교과목 이수

제10조(논문연구) ①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는 논문연구 과목을 둔다.

- ② 이 교과목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그가 추천하는 1인의 위원이 담당한다. <개정 2026.3.1.>
- ③ **논문연구는 1학점(1-0-2)**으로 하며, **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** 한다. <개정 2014.2.28.>
- ④ 이 교과목은 입학 후 제2학기부터 매학기 반복하여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2.28.>
- ⑤ **이 교과목은 석사·박사·통합과정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운영**한다.
- ⑥ 이 교과목의 **수료학점에 1학점만 인정**한다. <개정 2014.2.28.>

제18조(수강과목)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이 대학교 학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내에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.

- ② 학생은 **연구윤리와논문작성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**하여야 한다.

[신설,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<2025.3.1.>] <개정 2026.3.1.>

→ **2026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하며, 2028년 2월 이후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이수 필수**
논문연구: 지도교수님별 개설, 연구윤리와논문작성: 주임교수(학과장) 개설

3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14조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자격 충족

제14조(학위논문의 제출자격) ①이 대학교 학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 2026.3.1.)
②**박사학위논문 제출자**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정규 논문 유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지 혹은 학술대회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문사회·예체능 계열은 1편 이상, **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은 2편 이상**이어야 한다. (개정 2011.9.14, 2007.11.29., 2015.6.8., 2026.3.1.)
1. SCI, SCIE, SSCI, A&HCI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
2. SCOPUS 등재 학술지
3.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
4. BK21 CS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(신설 2026.3.1.)
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악학과의 학위종별이 음악학박사(Doctor of Musical Arts)인 경우, 학과에서 인정하는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리사이틀(개인발표회) 2회에 합격하면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(신설,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6.8.1.)
④제2항의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은 최소한의 요건이며, 학과·전공에 따라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. (신설 2007.11.29.) (제3항에서 이동,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.8.1.)
⑤**석·박사 과정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**해야 한다. (신설 2014.2.28, 개정 2015.6.8.) (제4항에서 이동 2026.8.1.)

4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합격

제15조(학위논문의 제출기한) ①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9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제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(개정 2011.9.14.)

② 제1항 각 호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조(학위종별)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학위증에 표기되는 학위종별은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[별표 1] ‘학위종별 및 해당학과’에 따른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26. 8. 1. 규칙 217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제3조에 단서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의 적용에 관하여는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병역·출산·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■ 2026년 3월 1일 이전 학적이 수료인 학생: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위 수여
(단, **현재 학적이 수료인 학생들은 2032년 2월 29일까지 졸업을 하지 않을 시**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적이 사라져 졸업의 근거가 없어지므로 **졸업 불가**)
→ 관련규정: 강원대학교 학칙

부 칙(2026. 3. 1. 규칙 제215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「국립학교설치령」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과 동 설치령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**2032년 2월 29일까지**(6년제는 2034년 2월 28일까지) **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**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정하는 특례 규정에 따라 강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
■ 2026년 3월 1일 기준 재학생(25학번까지)

- 2028년 2월까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: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졸업 기준을 따르며 강원대 학위 수여
- 2028년 2월 이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: 강원대학교 졸업 기준을 따르며 강원대 학위 수여